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인의 종류)                      ①(생략)                      ②(생략)                      &lt;신 설&gt;</p> <p>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                      ①구청장의 공인은 <u>시민과에</u>, 기타 기관·장 ……                      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을 <u>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u>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 공인은 <u>민원사무용입을</u> 표시하여야 한다.</p> <p>③생략                      ④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u>시민생활계</u>이, 민원사무용은 <u>민원봉사계</u>장이 관수한다</p>	<p>제2조(공인의 종류)                      ①(현행과 같음)                      ② “                      ③행정기관은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u>전자이미지 공인</u>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                      ①구청장의 공인은 <u>민원봉사과에</u>, 기타 기관의 장 ……                      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을 <u>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 무인민원발급기용</u>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u>민원사무용입을 무인민원발급기용일 경우 무인민원발급전입을</u> 표시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                      ④동장의 공인(구청장 공인중 민원사무용·합)은 <u>주무주사가</u> 관수한다.</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1. 12. 20.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1월 21일 이종환 의원의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11월 2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 86회(제2차정례회) 제8차 위원회(2001.12.11)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환 의원)

### 가. 제정이유

- 우리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 정보화사업과 지역사회와 관련한 자체개발사업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학교환경 개선 사업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가.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2조)

-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나. 보조기준액의 제한(안 제3조)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세의수입을 제외)의 3% 범위내에서 지원

#### 다. 보조금의 신청(안 제4조)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안 제5조)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

#### 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6조~7조)

-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인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호선  
 위 원 - 구청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교육청 국장급 2명

#### 바. 목적외 사용금지(안 제11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목적외로 사용시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본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해당금액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의 구세중 목적세(사업소세) 해당 금액도 서울특별시의 교육경비 지원 사례에 준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요지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부담되는 우리구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세의수입”을 제외한다를 “목적세”를 제외한다로 수

정하며,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기준액의 범위를 “3%” 범위내를 “2%” 범위내로 수정하고

- 또한 본 경비와 관련한 보조사업의 능률적인 자문을 위하여 동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을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교육위원 1인”을 추가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8호
----------	------------

제안년월일 : 2001. 12. 11  
제안자 : 빈웅길의원의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부담되는 우리구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의 내용중 “세의수입”을 “목적세”로 하고 “3% 범위내”를 “2% 범위내”로 함.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내용중 “구의원 3인”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교육위원 1인”을 추가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의 내용중 “세의수입”을 “목적세”로 하고 “3% 범위내”를 “2% 범위내”로 함.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내용중 “구의원 3인”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교육위원 1인”을 추가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의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 ..... .....목적세.....2%.....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②(생략) ③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 ..... .....구의원 2인, 교육위원 1인..... ..... ④(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호	208
-----------	-----

제출년월일 : 2001. 11. 21  
제 출 자 : 이종환의원의외 5인

#### 1. 제정이유

우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과 지역사회와 관련한 자체개발사업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학교환경 개선사업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2조)

-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보조기준액의 제한(안 제3조)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의수입을 제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

다. 보조금의 신청(안 제4조)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안 제5조)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

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6조~7조)

○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인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호선

위 원 : 구청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교육청 국장급 2명

바. 목적외 사용금지(안 제11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목적외로 사용시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2)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조례제정후 추경 등 별도 예산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  
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  
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  
다)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2. 보조사업의 목적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4. 보조사업의 효과
  -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경비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감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의 사용금지)

-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